

가정안 아동학대 법적보호 강화 시급

범위·기준 명료화...예방법 제정 제안

‘아동학대...’세미나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를 폭행하는 일이 흔히 일어나고 주변에서도 이를 방임하는 현실이나 학대의 범위나 기준이 모호해 예방책 마련 등이 어려운 실정이다.

아동학대예방협회(회장 홍강의)가 19일 연 ‘아동 학대와 전문적인 상담치료기술 개발’ 세미나에서 서울시립아동상담소 이영희 소장은 “부모나 친권자에 의한 신체적 학대가 가장 많은 아동학대 유형이나 학대와 훈육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아 아동보호가 어렵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아동 학대의 범위와 기준을 설정해 법적 처벌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85년부터 90년까지 서울시립아동상담소의 아동권익보호

신고센터에서 처리한 아동 학대 사례를 보면, 신체적 학대(57건)가 가장 많고 방임(22건), 정서적 학대(8건), 유기(5건), 성적 학대(4건) 등이다.

그러나 부모들이 학대를 ‘교육을 위한 체벌’이라고 주장할 경우 제3자가 개입할 근거가 없고, 학대자가 정신질환자이거나 성격이 난폭해도 아동과 격리해 보호할 치료·예방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 아동복지법·미성년자보호법·근로기준법·직업안정법·윤락행위방지법·형법 등에 아동권익 침해(학대) 규제조항이 들어 있으나 사회질서와 안녕유지 범위에만 해당할 뿐 가정에서 일어나는 구체적 학대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아동복지법 18조9항은 ‘자

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행위의 방법과 정도가 상세히 명시돼 있지 않아 가정내 아동 학대 법 적용에는 문제가 있는 실정이다.

이 소장은 예견되는 학대유형에 대한 타당도를 측정한 뒤 아동학대예방법을 제정해 학대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한편, 전문가들로 구성된 아동학대심의기구에도 처벌권한을 줄 것을 주장했다.

또한 병원·사회단체·경찰서 등에도 아동학대신고센터를 설치해 되도록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립아동상담소쪽이 임의로 마련한 아동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교육적 태만 △의료적 태만 등으로 부모가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린이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철규 기자〉

아이의 뺨을 때리는 것, 담배꽁초로 아이의 몸을 지지는 것, 뜨거운 물속에 집어넣는 것, 아이들의 성기를 가지고 장난하는 것, 계속해서 고향치는 것, 취한 상태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 밤새

도록 혼자 놔두는 것, 아이의 말을 거의 들어주지 않는 것, 아파서 우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것, 규칙적으로 약을 먹이지 않는 것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김경애 기자〉